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과 학 기 술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안 제21조의4)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의5)

심사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중 심사와 관련된 실적, 조직,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이후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 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민간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중장기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사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1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u> <u>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u> <u>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u> <u>2. 사업계획의 구체성</u> <u>3.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u> <u>4. 국고 지원의 적합성</u> <u>5.·6. 삭 제</u> <u>③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	<u>제21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이후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u> <u>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민간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중장기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신 설>

제21조의5(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
·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사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

양 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
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
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
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
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연 락 처	(044) 202 - 6942